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7706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	재단법인 W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
	담당변호사 변희찬, 조춘, 우도훈
피고, 피항소인	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
환송전판결	서울고등법원 2016. 8. 16. 선고 2016누36651 판결
환 송 판 결	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50037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3. 28.
판 결 선 고	2019. 4. 18.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가 2014. 1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,187,200원, 지방교육세 55,828,080원, 농어촌특별세 9,304,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2쪽 5줄의 "2013. 10. 16.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(기숙사) 용도로" 부분을 "2013. 10. 11.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(기숙사)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 5,084,863,159원의 처분 허가를 받아, 2013. 10. 16."로 고친다.

○ 3쪽 1줄의 "을 제1, 2호증의" 부분을 "을 제1 내지 3, 5 내지 7호증의"로 고친다.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.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니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다. 판단

1) 관련 법리

이 사건 조항, 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'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'장학단체'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'학자금 ·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 · 지원하거나, 금전에 갈음한 물건 · 용역 · 또는 시설을 설치 ·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'를 의미하고, 장학사업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'장학단체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어느 단체가 '장학단체'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, 정관의 목적사업,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,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) 원고는 2009. 8. 26. 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'공익법인법'이라고 한다)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하여 주무관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9. 9. 10. 설립된 재단법인이다. 원고의 설립허가증 및 정관에는 '① 어촌문화사업 및 어업인 교육 · 지원사업, ②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, ③ 장학사업, ④ 조사 및 연구지원사업, ⑤ 표창 및 시상사업, ⑥ D조합 대내외 홍보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위한 사업, ⑦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'이 사업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.

나)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어업인 자녀로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약 5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, 이 사건 부동산에 'X'이라는 명칭을 붙여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는 등 X을 운영하고 있다. 이에 더하여 저소득 어업인 자녀 대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3,000,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'Y'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다) 원고의 설립 직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· 사업별 예산편성 및 그 집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. 원고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, U법 제42조 등에 따라 지원받은 U 특별적립금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.

연도별·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 원)

구분	사업명	2010년		2011년		2012년		2013년		2014년	
		예산	집행	예산	집행	예산	집행	예산	집행	예산	집행
자체사업	E	-	-	-	-	-	-	-	-	150	135
	F	-	-	-	-	-	-	300	284	450	450
	G	50	25	50	31	100	78	100	29	-	-
	H	-	-	150	21	150	3	150	10	50	6
	I	-	-	-	-	50	30	100	19	-	-
	J	-	-	-	-	-	-	150	66	100	33
	K	-	-	-	-	-	-	-	-	100	67
	계	50	25	200	52	300	111	800	408	850	691
특별적립금지원사업	L	240	192	220	174	350	287	350	315	180	158
	M		130	-	-	-	-	-	-	-	-
	N	50	50	-	-	-	-	-	-	-	-
	O		50	-	-	-	-	-	-	-	-
	P		200	-	-	-	-	-	-	-	-
	Q		90	100	87	200	182	200	190	100	95
	R		450	-	-	-	-	-	-	-	-
	S	-	-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
	T	-	-	100	100	100	100	100	82	-	-
	계	1)	1,162	520	461	750	669	750	687	380	353

라) 원고의 자체예산 사업은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년에 처음

1)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록상 예산 편성내역을 알 수 없는 부분이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장학사업 예산 300,000,000원이 편성되어 그 중 실제 284,000,000원이 장학사업으로 집행되었다. 이는 그때까지의 연도별 합산 누적 예산편성금액 총 1,350,000,000원의 약 22%, 누적 예산집행금액 총 596,000,000원의 약 47.6%에 해당한다. 2013년도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체예산편성금액 800,000,000원 중 약 38%, 실제 예산집행액 408,000,000원의 약 69.61%를 차지한다.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로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자체예산편성액 850,000,000원 중 장학사업 예산으로 약 71%인 600,000,000원이 편성되었고, 그 중 실제 장학사업으로 585,000,000원이 집행되었다. 이는 실제 집행된 총 예산 691,000,000원 중 약 85%에 해당한다.

마) U 특별적립금 지원사업과 함께 보면, 2013년 총 예산집행금액 1,095,000,000원 중 장학사업 집행금액 284,000,000원은 약 25.9%에 해당하고,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L 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은 315,000,000원으로서 전체의 약 29%에 해당한다. 2014년에는 장학사업 집행금액 585,000,000원이 총 예산집행금액 1,044,000,000원의 약 56%에 해당하여 과반수 비중을 차지하였다.

바)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자산은 5,084,000,000원 상당이 되어 2013년 말 원고의 총 자산 8,144,000,000원의 약 62.7%를 차지하게 되었다. 2014년 말에는 원고의 총 자산 9,789,000,000원 중 약 51.8%를 차지하였다.

3)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설립근거인 공익사업법,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, 실질적인 활동내역,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, 원고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그렇다면 원고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.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가)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정관 등에 장학사업을 그 목적사업 중 하나로 기재하였다. 그리고 위 장학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5,084,863,159원 상당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.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장학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은 그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전체 자산의 약 62.7%에 이르러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, 이는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이다.

나)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이후 곧바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어업인 자녀들의 기숙사 용도로 제공되어 원고의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다.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듬해인 2014년에는 자체사업 예산 중 약 71%의 예산이 장학사업으로 편성되었고, 실제로 약 85%의 예산이 집행되는 등 장학사업의 비중이 2013년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.

다)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2년까지는 장학사업에 사용한 예산이 없었고, U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고의 2013년 총 예산집행실적 중 장학사업의 비중은 약 25.9%로 약 29%를 차지한 L 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2012년까지는 원고가 설립된 초기단계로서 집행된 예산의 규모가 미미하였다.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같이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 그렇다면 원고가 설립 초기부터 바로 장학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장학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수 없다.

라) 주무관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U 특별적립금 지원사업과 달리, 2013년 원고의 자체예산 사업에서는 장학사업의 비중이 약 69.61%로 가장 높다. 원고의 2013년 총 예산집행금액 1,095,000,000원 중 장학사업(약 25.9%)과 L 사업(약 29%)의 비중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하다. 한편,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,652,340,000원에 이르는데, 이를 고려하면 2013년 원고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장학사업이라 할 것이다. 2013년까지의 연도별 합산 누적 예산집행금액에서도 장학사업이 약 47.6%를 차지하는 만큼 원고의 장학사업을 단순히 부대업무라고 보기 어렵다.

마) 원고는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고 있고,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다. 이러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, 장학단체의 건전한 설립·운영을 전제로 공익사업인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31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